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

#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_퇴직연금)

## 제1조(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사업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에 가입한 자 또는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사업방법서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 다. 자영업자
    -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8. “사전지정운용제도”라 함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 함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사업방법서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이 사업방법서에서 “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경영의 지역 및 범위)

#### ① 지역

회사와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계약(이 사업방법서에서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
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를 설정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의 적용을 받는 해당 근로자

#### ② 범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 및 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를 설정한 사업에 속한 가입자에 대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라 한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법·보험업법 관련 법령에 의한다.

### 제5조(보험종목의 세목)

#### ① 주계약

1. 금리연동형
2.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4. 실적배당형(펀드유형: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글로벌이며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② 부가하는 특약 : 연금전환 부속협정서

### 제6조(이율의 적용)

- ① 이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세목별 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아래의 적용이율로 한다.

구분		적용이율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4년	4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5년	5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3년형 (디폴트옵션 전용)		이율보증형 3년형 (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②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금리연동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적용이율은 회사가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및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textcircled{O} \text{ 기준이율}(\%) = \frac{\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2 + \text{지표금리} \times 1}{3}$$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때,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하며,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기준이율의 산출시점 을 기준으로 한다.

$$(가) \text{ 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textcircled{O} \text{ 경과수익률}(\%) = \frac{\text{투자수익}}{\text{평균자산}^{\textcircled{1}} - (\text{투자수지}^{\textcircled{2}} \div 2)} \times 100$$

$$\textcircled{O} \text{ 경과지출률}(\%) = \frac{\text{투자비용}}{\text{평균자산}^{\textcircled{1}} - (\text{투자수지}^{\textcircled{2}} \div 2)} \times 100$$

$$\textcircled{O} \text{ 운용자산수익률}(\%) = (1 + \text{경과수익률})^{12/6} - 1$$

$$\textcircled{O} \text{ 투자지출률}(\%) = (1 + \text{경과지출률})^{12/6} - 1$$

### ① 평균자산

$$= \frac{\text{해당월 직전 } 6\text{개월말자산} + \sum(\text{해당월 전월까지 월말자산} \times 2) + \text{해당월말자산}}{6 \times 2}$$

단, 매월말 현재 특별계정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에 투

입되지 않고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중인 납입부담금은 제외

② 해당월(적용이율 산출시점의 직전월)부터 과거 6개월간 누적 투자수익(손익계산서)

= 투자수익(대변합계-부담금수익)

- 투자비용(차변합계-계약자적립금 전입-지급보험금-특별계정운용수수료)

단, 주주지분 이익 또는 주주의 손실보전금 제외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안증권 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회사채수익률① + 국고채수익률② + 통안증권수익률③) / 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2. 이율보증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  
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  
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다.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  
권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한다.

○ 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①+국고채수익률②+통안증권수익률③)/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  
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3.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  
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

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다.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권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한다.

○ 기준이율(%)=(회사채수익률①+국고채수익률②+통안증권수익률③)/3

① 회사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② 국고채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통안증권수익률 :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은 해당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하고, 이율보증형의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적용한다.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제2항의 적용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산출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되고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한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한다.

⑥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 운용지침을 따른다.

## 제7조(부담금의 종류)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일시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개인부담금에 의해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제8조(보험기간 및 부담금 납입)

① 보험기간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

② 납입기간

1. 개인형 : 일시납 또는 전기납
2. 기업형 : 전기납

③ 수금방법

가입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 제9조(보험계약 체결절차)

① 이 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가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가 청약한 경우 가입자에게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원본의 내용이 그  
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통신판  
매 계약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가입  
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  
몰을 말한다)에서 약관을 가입자가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드리  
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제10조(수수료)

①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한다.

### 제11조(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없음

### 제12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

① 급여의 종류 : 연금 또는 일시금

② 급여의 지급

1. 개인형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2. 기업형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이  
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사업방법서  
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실적 배당형의 운용)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3조(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의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액(이 사업방법서에서 "중도해지부과액"이라 한다)]을 잔여적립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부과액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양도 · 압류 ·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정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설정

이 계약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 가. 금리연동형
- 나.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 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②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계정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경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제15조 제7항 제1호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말하며, 이 사업방법서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한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④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담금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단,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의 경우는 지급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체함)

- 가.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나.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다. 이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라. 자산관리수수료 및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16조(이율보증형의 운용)

- ① 회사는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다. 이 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 상환합니다.
- ⑤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에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60%로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운용)

- ① 회사는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다. 이 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보증기간(3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만기 상환한다.
- ⑤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에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80%로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보험에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이 포함된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험 만기일에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의 끝나는 날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한다.

## 제18조(실적배당형의 운용)

①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 사업방법서에서 “펀드”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 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40%이내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2.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장기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3.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주식(코스피 주식만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KOSPI 지수 수익률(시장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분산 투자. 주식시장 예측이 어려울 때 저렴한 운용보수로 장기적인 수익률 증가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4.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장기 성장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 및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

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5.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삼성그룹관련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삼성그룹관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30%이내에서 주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트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7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식, 삼성그룹과 관련된 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주로 투자하여 삼성그룹의 성과를 추종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6.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해외주식, 해외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성장성 높은 이머징 시장관련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 투자 및 국가 및 업종 분석을 통한 종목 발굴을 통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7.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및 단기 유동성 상품(CP, CD 등)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 : 국공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성 및 유동성을 갖춘 포트폴리오 구축 후 CP 및 기타 현금성 자산(CD, 정기예금 등) 투자를 통한 초과 성과 추구
8.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해외주식, 해외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40%이내에서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높은 성장성을 지닌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등을 편입하여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9. TDF 2025,2030,2035,2040,2045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 따라 펀드 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목표년도를 타겟으로 하여 자산배분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로, 운용초기에는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자산총액의 80% 이내, 나머지는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단,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30%이내로 축소하며,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이와 관련된 과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 포함), 국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으로 합니다.

- 운용전략 : 은퇴 잔여기간이 길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자산 증식을 추구하며, 은퇴시기에 근접할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안정성 추구합니다.

#### 10. TIF 20

TIF20는 노후 자산관리에 특화된 맞춤형 펀드로써 초기 은퇴자산을 최대한 보존하여 은퇴자의 일상적인 노후자금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써, 글로벌 배당, 이자 등 인컴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글로벌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위주로 투자하여 자산의 이자수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부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자산총액의 20% 이내, 나머지는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이와 관련된 과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 포함), 국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으로 합니다.

- 운용전략 : 꾸준하게 안정적인 현금흐름(Target Income)을 창출하는 인컴수익 확보에 집중하되, 일부 글로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물가상승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추가합니다.

#### 11. 플러스알파혼합형

플러스알파 혼합형 펀드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이지만, 낮은 금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 대상으로 통숏전략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등락 및 방향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과 국내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운용전략 : (주식부분) 기업 펀더멘탈(기업실적, 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 매수(Long), 고평가된 주식은 차입 매도(Short)하여 주가방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채권부분) 다양한 액티브 채권 전략과 전문적 신용관리로 시중금리 이상의 꾸준한 성과를 추구합니다.

#### ② 펀드선택 및 변경

1.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1항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3.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가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4.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제5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단,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의 경우는 “변경요구일+10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5.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단,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의 경우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③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④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회사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나.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라. 가목 및 다목에 준하는 경우

-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가입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가입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한다.

⑥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약관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⑦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 특별계정 운영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한다.
-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구 분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3750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4120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2200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4120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0.1915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3100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0.1650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5200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2000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3500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2000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2000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3500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0.3500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1000

3.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3000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1630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1050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1630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0.1335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1050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0.0100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0010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1500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010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1500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010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1500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0.1500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010

4. 펀드 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0100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00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00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00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0.0100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200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0.0100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0200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0.0200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00

5. 펀드 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 분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0150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50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50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50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0.0150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50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0.0150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0.0150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0.0200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0.0200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0.0150

6.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과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 ⑧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제7항의 비용 이외에도,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제19조(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사업방법서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실적배당형의 운용)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제20조(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5조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단,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의 경우는 「변경요구일+10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제21조(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22조(기타)

### ① 용어의 사용

이 사업방법서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 ② 약관의 변경

1. 약관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입자가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